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보훈발전 관련 연차보고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75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국가보훈발전 관련 연차보고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3. 10.
3. 회부일 : 2025.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연차보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실천계획과 그에 따른 조치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3.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 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발전에 관한 사항

	<u>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u> <u>③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보훈위원회¹⁾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으로,²⁾ 국가보훈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

방향,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³⁾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 참조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2006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3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 수립되었음.

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보훈 기본법」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연혁〉

차수 (연도)	목표	주요과제	실천결과
1차 (2006)	보훈가족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은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는 사회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 구축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 확산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중상이자 보상금 집중 인상 수원·광주요양원 건립 등 *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 추진하 여 '09년 조기 달성
2차 (2009)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정신적 귀감이 되는 사회 실현	▲ 보훈체계 선진화 ▲ 보훈의료·복지체계 합리화 ▲ 나라사랑 정신 고양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 훈보상대상자 도입 등 *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간접적인 경우 보훈보상자 로서 지원
3차 (2014)	명예로운 보훈	▲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 경찰·소방공무원 예우	▲ 국가 주도의 미등록 6·25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 개 시, '서해수호의 날' 정부 기념일 제정 등
4차 (2018)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 실현	▲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복지 ▲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 급여금 공제 도입,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5차 (2023)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	▲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사업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제9조제1항),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는바(제9조제3항),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보훈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 뿐만 아니라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부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행정기관등의 국회보고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국가보훈부 소관 중장기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발전 (5개년)기본계획·실천계획,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상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5개년)기본계획·시행계획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립묘지 (5개년)종합관리계획 등이 있으며, 위의

중장기계획 모두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의무 규정은 없음.

- 국가가 정부의 국가보훈발전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조치 및 평가 결과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부 소관 중장기계획들의 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부담으로 국가보훈부 소관 중장기계획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개정안의 연차보고 항목>

개정안		연차보고 범위	주요 내용
제9조의2 제2항	제1호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제2호	실천계획	•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제3호	중앙행정기관 조치결과	• 기본계획 변경 시, 실천계획의 변경 및 필요한 조치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치결과	• 실천계획 관련 지자체의 경우, 실천계획의 내 실 있는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및 결과
		조치결과 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결과 평가
	제4호	그밖에 필요사항	• 국가보훈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 필 요사항

- 국가보훈부는 실천계획에 이미 연차별 과제·이행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를 제외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등의 국회 보고에는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중앙행정기관 법정관리 기본·실천계획 등에 관한 입법례

법령명	소관부처	기본계획			실천(시행)계획			비고
		수립	심의	국회 제출	수립	심의	국회 제출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보훈부	5년 주기	국가보훈 위원회	X	매년	X	X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5년 주기	국가공간 정보 위원회	○	매년	○	○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실시계획
문화기본법	문화체육 관광부	5년 주기	X	○	매년	X	○	문화진흥 기본·실시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5년 주기	양성평등 위원회	○	매년	○	○	양성평등정책 기본·실시계획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5년 주기	청년 정책조정 위원회	○	매년	○	○	청년정책 기본·실시계획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5년 주기	재외동포 정책 위원회	○	매년	○	X	기본·시행계획 추진상황 등 보고서 국회 제출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 주기	국가지식 재산 위원회	X	매년	○	X	시행계획 추진실적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 자원부	5년 주기	국가표준 심의회	X	매년	○	X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5년 주기	국가물류 정책 위원회	X	매년	물류정 책분과 위원회	X	
소방기본법	소방청	5년 주기	X	X	매년	X	X	
스포츠기본법	문화체육 관광부	5년 주기	국가 스포츠정 책 위원회	X	매년	X	X	
자격기본법	교육부	5년 주기	자격정책 심의회	X	매년	X	X	